

바.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(안 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,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 신설)
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 해태, 권한 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함.

사. 후견계약 제도의 도입(안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 신설)

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도록 하고,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.

아.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을 등기를 통하여 공시(안 제959조의 15, 제959조의 19, 및 제959조의 20 신설)

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계약 등을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함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1년 3월 7일

국무총리 김 향 식

국무위원 이 귀 남
법무부장관

●**법률 제10430호**

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

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,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,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내지 아니하고”를 “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낸”을 “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(訴狀)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소송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1년 3월 7일

국무총리 김 황 식

국무위원 이 귀 남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0431호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흥기나”를 “제301조(강간등 상해·치상),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의 죄 및 흥기나”로, “제300조(미수범),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, 제301조(강간등 상해·치상) 및 제301조의2(강간등 살인·치사)”를 “제300조(미수범) 및 제305조(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추행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「형법」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의 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8조, 제299조, 제300조, 제305조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강간치사·치상죄는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혼자서 범한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, 「형법」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범한 「형법」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제305조의 죄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죄도 특정강력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